

「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+사업」 2024년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천안시와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천안시의 미래모빌리티 생태계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+사업의 연구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5월
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

1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+사업
- 전담기관 :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연구센터
- 사업목적 : 천안시 소재 중소·중견기업의 미래모빌리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과제 및 사업화 지원으로 신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

2 지원 내용

- 모집대상
 - 천안에 소재한 기업으로 미래모빌리티 소재·부품 관련 품목을 사업화 하고 있거나, 신규아이템으로 사업화 추진을 희망하는 중소·중견 기업
 - ※ 천안 지역에 본사, 공장, 지사, 연구소 등이 소재한 기업(단순 영업소 제외)
- 지원규모
 - 1) 미래모빌리티 기술 R&D: 최대 7,500만원 (기업부담금 有)
 - 2) 사업화지원: 최대 100만원 (기업부담금 無)
- 지원기간
 - 1) 미래모빌리티 기술 R&D: 협약일로부터 ~ 2024. 11. 30.
 - 2) 사업화 지원: 선정 일 ~ 2024. 11. 30. 이내

□ 지원 프로그램 및 내용

프로그램	지원 내용
미래모빌리티 기술 R&D	- 미래모빌리티 분야 중 기술준비수준(Technology Readiness Level) 4-8 단계 해당 기술 지원
사업화 지원	- 미래모빌리티 분야 중소·중견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지도, 컨설팅, 마케팅, 투자, 경영 등 수혜기업 요구에 따른 전문가 지원

□ 지원방식

프로그램	미래모빌리티 기술 R&D	사업화 지원
유 형	연구과제	기업지원
지원금액	최대 7,500만원	최대 100만원
기업부담금	해당 有	해당 無
지원방식	사업비 지급	직접지원

※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,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

3-1 미래모빌리티 기술 R&D

□ 지원 분야

○ 지정 공모 지원 대상 과제 목록

구분	지원내용	분과
1	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스마트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개발	자율주행
2	어린이(Group 3, 22~36kg, 만6~11세)용 안전조끼형 카시트	편의·안전
3	툴샵(Tool-shop) 탑재 차량을 위한 경량화 모듈	편의·안전
4	어린이 안전 하차 보조 시스템	편의·안전
5	배터리 교환식 Energy Platform	이차전지
6	대형 터치스크린용 Haptic Actuator 개발	디스플레이
7	UAM 특성 반영한 배터리 BMS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요소기술 개발	UAM
8	열쾌적성 기반 UAM 캐빈 내부용 개별 냉난방 시스템 기술 개발	UAM

9	교통약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(DRT, Demand Responsive Transit) 시범 서비스 플랫폼 개발	플랫폼
10	특정 지역 순환형 자율주행셔틀 운영체계 개발 및 실증	플랫폼
11	자율주행차 주행상황에 대한 탑승자 사전 인지를 위한 정보제공기술 개발	플랫폼

※ 공고된 과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○ 자유 공모

- 미래모빌리티 신규 성장 아이টে으로 산업 혁신 기술
- 미래모빌리티를 위한 용도 및 수요 확대 기술

※ 지원 대상은 심사평가 결과 및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

□ 신청 자격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현재 천안 지역 내 법
인사업자(기업)이어야 함

※천안 지역에 본사, 공장, 지사, 연구소 등이 소재한 기업(단순 영업소 제외)

-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천안 지역 내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
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 제2항 및 같
은 법 시행령 제11조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제2조제1
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5,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

□ 사업비 지원기준

-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
발비로 구성
-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에
따라 달리 적용 가능
-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
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

지원프로그램	기업규모	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	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
미래모빌리티 기술 R&D	중소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% 이하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
	중견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% 이하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% 이상

- ※ “중견기업”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 기업임
- ※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임

□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

-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신규채용인력은 현금으로 산정 가능
 -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 - 최초 공고(2024년 5월 13일 공고) 기준 6개월 이전(2023년 11월 14일)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 인력으로 간주
- 연구개발비 비목 중 연구재료비, 연구활동비 항목만 산정 가능
 - 본 과제는 미래모빌리티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하므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재료비, 연구활동비 비목 이외 연구개발비 산정 불가(연구시설·장비비, 연구수당, 간접비 등)
 - 기술 개발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외 항목 산정 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한 조율 필요

3-2 사업화 지원

□ 지원 내용

- 기술지도, 컨설팅, 마케팅, 투자, 경영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 애로사항 전문가 지원

□ 지원 방식

- 다중 지원 가능
 - 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의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다중 지원 가능
- 지원 방식: 직접지원 형태

□ 신청 자격

- 천안 지역 내 미래모빌리티 기술 개발 및 미래모빌리티 전환에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·중견 기업

4 진행 절차 안내

□ 과제 진행 일정

지원절차	추진방법	추진주체
공고/접수 (5.13-5.31)	· 지원사업 공고 · 관련 양식에 의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· 접수	신청기업 ↓ 전담기관
▼		
선정평가/결과통보 (6.7)	· 프로그램 대면 평가 · 지원대상 선정, 사업비(지원금 확정), 선정결과 통보	선정평가 위원회
▼		
협약체결 (6월 중)	· 선정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전 협약체결	전담기관 ↕ 참여기업
▼		
사업수행 (협약체결일부터 ~11.30)	· 협약 프로그램 내용에 의거, 사업수행	참여기업
▼		
중간점검 (8월 중)	· 진행사항 및 진도 점검 · 프로그램 추진 애로사항 등 청취	전담기관 ↓ 참여기업
▼		
완료/결과보고 (제출일: 11.30)	· 사업수행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	참여기업 ↓ 전담기관
▼		
완료평가/결과통보 (12월 중)	· 지원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완료 평가	완료평가위원회 전담기관 ↓ 참여기업
▼		
사업비 정산 (12월 중)	· 지원프로그램 수행 결과에 따른 사업비 정산	참여기업 ↓ 전담기관
▼		
사후관리 (12월~)	· 고용, 매출 등 발생 성과조사 ·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	참여기업 ↓ 전담기관

※ 추진절차 및 일정은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□ 선정방법

- 1단계(서류검토): 지원신청서(사업계획서)의 접수서류 및 지원조건 검토
- 2단계(선정평가): 지원신청서(사업계획서)를 대상으로 평가항목에 의한 대면 평가
- 연구개발비 적정성 평가: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
- 평가위원 : 외부전문가(5명 내외)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
- 평가방법 : 평가위원의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순위로 선정

□ 평가항목

평가항목	평가 내용	배점
사업 적합성 (20)	- 기업 현황(매출액, 부채비율, 직원수, 조직, 개발역량 등) -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경영진의 혁신의지	20점
지원 필요성 (35)	- 요청사항의 시급성·필요성 - 현재 보유한 기술·역량의 미래모빌리티 적용 가능성	35점
지원 타당성 (30)	- 전환 추진시도 및 결과분석의 구체성·적정성 - 현재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	30점
기대효과 (15)	-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의 현실성·적정성 - 기업의 성장 가능성(고용·매출증대 등)	15점
합계		100점
가점 (5)	수요자 연계 신청기업: 1점 ¹⁾	5점
	신규고용창출 인원: 1점 ²⁾	
	과제 관련 국내외 지재권 출원·등록 건수: 1점	
	과제 결과 관련 매출 발생액: 1점	
과제 결과 관련 수출 발생액: 1점		
별도평가	○지원예산 활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- 증액/적정/감액으로 나누어 평가	-

1) 수요기업 협약서 제출 시 인정

2) 채용(예정) 확인서 제출 시 인정

※ 위 평가항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※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

□ 선정결과

-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, 선정결과는 All in one service을 통해 개별공지

5 신청서 접수

□ 공고: 2024. 5. 13.(월) ~ 2024. 5. 31.(금)

□ 접수

1) 미래모빌리티 기술 R&D: 2024. 5. 15.(수) ~ 2024. 5. 31.(금) 16:00까지

2) 사업화 지원: 2024. 5. 15.(수) ~ 예산소진시 까지(상시접수)

○ 신청서 양식은 반드시 본 공고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, 추가 증빙 자료는 첨부하여 제출

□ 제출서류

1) 미래모빌리티 기술 R&D

- [서식 1-1] 미래모빌리티 기술 R&D 사업계획서(hwp)
- [서식 2] 개인정보·과세정보 이용·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(PDF)
- [서식 3] 협약서(PDF)
- [서식 4] 수요기업 협약서(PDF, 해당시)
- [서식 5] 채용(예정) 확인서(PDF, 해당시)
- 사업자 등록증(PDF)
- 신청기업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(2022, 2023)(PDF)
 - ※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
 - ※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해당기간 재무제표 제출

2) 사업화 지원

- [서식 1-2] 사업화 지원신청서(hwp)
- [서식 3] 협약서(PDF)
- 사업자 등록증(PDF)
- 신청기업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(2022, 2023)(PDF)
 - ※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
 - ※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해당기간 재무제표 제출

□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처

○ 신청방법

- All in one service(<https://innopolis-katech.re.kr/aiops>) 회원가입 →
사업관리 > 사업관리 > 등록하기 > 정보기입 > 압축파일 업로드 > 확인

○ 신청서류

- All in one service(<https://innopolis-katech.re.kr/aiops>) 회원가입→
사업공고 > 천안시 사업 > 해당 공고선택 > 첨부파일 확인

※ 오프라인 접수 불필요

□ 문 의 처

수행기관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한국자동차연구원	김준석 연구원	041-559-3342	jskim2@katech.re.kr

□ 지원제외 대상

-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, 휴폐업,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희생인가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)
-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(단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)

□ 기타사항

- 수요기업 연계를 통한 가점 신청 시 수요기업 협약서 필요
-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공고문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-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과제에 선정된 기업은 연구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, 전시,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
- 제출된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완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함
- 사업 종료 후 지원분야 연계 성과(매출, 고용 등) 파악을 위한 성과자료 제출 요청 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음